

물질안전 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클링커(Clinker)
-----	--------------

MSDS 번호 : AA04494-00000000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클링커(Clinker)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시멘트용 - 40.단열재 및 건축용 재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긴급전화번호	033) 571-7000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흡인 유해성 : 구분1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계 자극)
---------------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위험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5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보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십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십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십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응

P332+P313 피부에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보건
화재
반응성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명(관용명)	CAS 번호	함유량(%)
CaCO3	Limestone	1317-65-3	89~90
SiO2	산화규소	14808-60-7	4~8
Al2O	알루미나	65997-16-2	2~4
Fe2O3	산화철	12259-21-1	1~2

4. 응급조치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경미한 피부접촉 시 오염부의 확산을 방지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흙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라. 먹었을 때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 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나.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용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흘러지지 않게 하시오.
- 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흡을 발생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흡·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덮이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십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ACGIH 규정

TWA - 10mg/m³
 흡입성
 STEL 5 mg/m³
 TWA 1 mg/m³

생물학적 노출기준

해당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흡 또는 미스트를 방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십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노출농도가 100mg/m³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노출농도가 250mg/m³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노출농도가 500mg/m³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p>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p> <p>노출농도가 10000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p> <p>노출농도가 100000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p>
눈 보호	<p>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십시오.</p>
손 보호	<p>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p>
신체 보호	<p>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십시오.</p>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고체
색상	회색이거나 검은색
나. 냄새	무취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12~13 (습윤 시멘트(wet cement))
마. 녹는점/어는점	> 1000 °C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 안됨)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
카. 증기압	0 mmHg (at 20 °C)
타. 용해도	(물 용해도: 반응함)
파. 밀도	3.15 g/cc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p>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p> <p>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p> <p>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p> <p>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흡을 발생할 수 있음</p>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흡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극. 호흡곤란, 폐 이상
자극
피부 자극(심한 경우도 있음)
눈 자극, 시각 장애, 눈 손상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자극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눈 자극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장시간 반복 노출시 피부염 또는 피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흡인유해성

(폐렴 : 사례 -시멘트를 삼킨 6명의 환자들에게서, 1명의 성인이 기관지 폐렴에 걸렸고 한 어린이는 흡인 진폐증에 걸렸다.)

<PNEUMONIA>: CASE SERIES - In a series of 6 patients evaluated after swallowing cement, 1 adult developed bronchopneumonia and a child developed aspiration pneumonitis (Visvanathan, 1986).

(Tomeson; Medical Management)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미생물분해, 생물농축성 적용할 수 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물 또는 수분으로 경화시킨 후에 시멘트는 생태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았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24개월)(광물성 분진)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개월)(광물성 분진)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Visvanathan, 1986). (Tomeson; Medical Management) (흡인유해성)	
IUCLID(생분해성)	
IUCLID(마. 기타 유해 영향)	
나. 최초작성일	2015-08-27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4 회
최종 개정일자	2021-07-01
라. 기타	
자료없음	

-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MSDS를 참고하여 편집, 일부 수정한 자료임
- 본 MSDS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각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할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함
- 취급자, 구매자 또는 3자의 물질안전 취급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자료임
- 제품의 특정한 성질이나 특수한 목적의 적합성 또는 품질에 대해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아니됨. 끝.